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연금공단의 설립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27호)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퇴직연금공단의 설립 및 업무	3
2. 퇴직연금공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11
3. 퇴직연금연구원의 설치	24
4. 부칙	26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5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기금 운용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제도의 안착과 확대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운용·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 2 신설).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내실화 관련 사용자에 대한 감독 행정 지원,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 6 신설).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6까지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12조의18 신설).

IV. 검토의견

1. 퇴직연금공단의 설립 및 업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공단의 업무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포함) 수급권 보호 등을 규정하며(안 제12조의3 신설 및 안 제7조제2항),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한 법인격, 설립등기, 사무소, 정관에 관해 규정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략)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② ----- ----- ----- ----- -----.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
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
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이 법에-----퇴직
연금공단을-----

-----.

제2장의2 퇴직연금공단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고
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을 설립한다.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2.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
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수급권 보호 및 내
실화 관련 사용자에게 대한 감독
행정 지원
3.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4.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교육

<신 설>

<신 설>

<신 설>

및 홍보

6.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국제협력

7.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그 밖에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의4(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의5(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7(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u><신 설></u> <u><신 설></u>	<u>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 <u>11. 공고에 관한 사항</u> <u>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제12조의8(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u> <u>제12조의30(「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¹⁾는 DB, DC, IRP 등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소·영세기업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곤란을 겪고 있어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던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²⁾³⁾ 현행법은 중퇴기금 도입에 따라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 대출 협조 등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때 중퇴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 전담 조직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부서 단위에서 운영되는바 제도의 안착과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퇴기금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중퇴기금의 전문적·독립적 운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중퇴기금은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도입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38호, 2022. 4. 14. 시행) 개정이유

3) 중퇴기금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중퇴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4)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5)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장 3만2천여 개, 가입자 14만 6천명 상당의 규모로,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단 신설을 통한 체
계적 행정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어 전문성 있는 퇴직연
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
이나, 현재 공단의 주된 업무로 예상되는 중퇴기금의 경우, 2022년 제
도 시행 이후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안정적 성과가 도
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중퇴기금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2024년 12
월말 기준 수익률 6.52%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중퇴기금은
운용기간이 3년 이내로 표본기간이 단기간인바 장기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12조의
3제9호는 ‘그 밖에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 외 퇴직금
이 포함되는바,⁶⁾ 퇴직연금공단의 업무 범위가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여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안 제12조의4(법인격), 제12조의5(사무소), 제12조의7(정관), 제12조의8(설립 등기) 및 제12조의30(「민법」의 준용)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근거법률 체계와 일치하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퇴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의(현행 30인 이하 사업장)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경우, 가입자 및 관리대상 사업장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통한 체계적·독립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역할, 업무, 차별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삭제(퇴직연금 공단의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분야에서 퇴직금의 안정적 보장, 노후소득 보장 강화, 근로자의 자산 형성지원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에서 민간금융기관이 자산을 수탁·운영중이라는 국내 연금시장의 구조 및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제도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정책 영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근로복지공단 내의 퇴직연금계획부·운영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기관 신설 시 추가 재정소요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퇴직연금공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인의 기관인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이 구성, 임기, 직무, 결격사유, 당연퇴직, 해임, 겸직제한, 이사회 등을 규정하고(안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5까지), 직원의 임면을 규정하며(안 제12조의16), 고용노동부의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12조의18), 공단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안 제12조의19부터 제12조의25까지),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12조의26), 자료활용(안 제12조의27) 및 금지행위, 벌칙등(안 제12조의17, 제12조의28, 제12조의29, 제45조 및 제48조)을 규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9(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

<신 설>

<신 설>

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퇴직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⑤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10(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11(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 설>

<신 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2조의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13(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

<신 설>

<신 설>

<신 설>

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 제8항에 따른다.

제12조의14(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
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
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의15(이사회) ① 공단에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
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
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
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16(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

<신 설>

<신 설>

<신 설>

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17(별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의18(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19(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신 설>

<신 설>

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0(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전입금,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3. 제12조의23에 따른 차입금

4. 제12조의24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 및 제12조의25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③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및 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1(예산의 편성 등) ① 이
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신 설>

<신 설>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2(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3(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4(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의25(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제12조의26(업무 위탁)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신 설>

<신 설>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7(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세청·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금융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의3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2조의28(비밀엄수의 의무) 공단

<신 설>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
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
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
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
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
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
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삭 제>

<u>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u>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45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12조의2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u>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제12조의29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의 각 조항은 퇴직연금공단 신설에 따른 임직원·회계 및 재정 및 기타 벌칙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등 유사한 공공기관의 근거법률과 구성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5조(벌칙) 및 제48조(과태료)와 관련하여,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누설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직무상 비밀누설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4항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⁹⁾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1호¹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한국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임직원의 검직 제한 등)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¹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¹²⁾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때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 의무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타 산하기관 관련법률의 규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공단은 제도의 도입·운용·수령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확산을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 감독행정 지원, 융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제도의 내실화 및 가입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퇴직연금연구원의 설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국제협력(안 제12조의3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2조의6(퇴직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12조의3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u> <u>② 퇴직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국제협력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정책연구 등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퇴직연금연구센터’가 있고, 퇴직연금연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장·단기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문적 조사·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연구원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공단 산하 퇴직연금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 국제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4. 부칙

가. 개정안 부칙의 주요내용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등이 퇴직연금공단으로 승계됨을 규정함(제2조).

개정안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공단으로의 사업, 재산, 권리·의무 등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때 추가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7의2¹³⁾ 관련 자료를 퇴직연금공단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한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0

13)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다)